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2나240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전주현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2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으로,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79,360,000원, 피고 D는 158,720,000원, 피고 E는 476,160,000원, 피고 F, G은 각 172,339,200원, 피고 H은 190,361,600원, 피고 I은 246,681,600원, 피고 J은 344,678,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79,360,000원, 피고 D는 158,720,000원, 피고 E는 476,160,000원, 피고 F, G은 각 172,339,200원, 피고 H은 190,361,600원, 피고 I은 246,681,600원, 피고 J은 344,678,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9. 6. 26. 여수시 K 외 일원 및 L동 일원에서 M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사업 약정서(갑 제1호증)

여주시 K 외 일원 및 L동 일원 M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현재 경매 개시 진행 중인 N 경매가 완료되어(피고 B이 지정하는 법인 명의로 낙찰 받아) 경락 대금 납입 후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2조(경락대금 및 명의)

경락대금 및 명의(입찰)는 피고 B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공로금 및 처우방법)

1. 아래 공로금과 기타 채우는 위 경매에서 낙찰 받은 법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의 공로금은 8억 원으로 하고, 지급 명목은 기술 자문료로하기로 한다.

제6조(사유지 확보 및 부동산 매매계약)

현재 사유지 상태에 있는 O, P, Q, R, S, T 등 6필지에 대하여 원고는 경매 완료 전 피고 B이 지정하는 매수인과 위 사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6필지의 사유지의 매매가격은 원고와 피고 B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9. 7. 19. U으로부터 여주시 R 잡종지 955㎡(이하 'R 토지'라 한다), S 전 658㎡(이하 'S 토지'라 하고, R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U은 2019. 7. 3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8. 1. 피고 B, C, D, E에게2) R 토지에 관하여 2019.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F, G, J, H, I에게3) S 토지에 관하여 2019.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20. 1.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매도인인 U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U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단70028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2020. 1.

2. 법무법인(유한) W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들은 2020. 1. 13. 법무법인 감동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3. 피고들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카단3호, 이하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2020. 1. 31. 그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4) 2020. 2.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원고는 2020. 1. 16. 법무법인(유한) W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원고는 2020. 5. 18. ‘R 토지가 원고의 토지임에도 X과 피고 B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X과 피고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X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X과
피고 B은 ‘원고의 X,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가 무고에 해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
소제기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무고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11. 13. Y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제1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합의약정서(갑 제32호증)

제2조(합의사항)

1. 원고가 X, B을 고소한 형사사건 관련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
2. X 등이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무고, 소송사기 등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도
이 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계하여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순천지원 민사부에 제기한 ‘부동산등기원인무효’, ‘가처분금지’
민사소송을 취하한다.

제3조(합의조건)

Y은 원고에게 제2조의 보수로 10억 원을 지급한다.

(단, 이 사건 각 토지5)에 대한 소유권이 Y이 지정한 V의 명의로 경료된 날 즉시 지급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5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제세금 포함).
 2. 4억 5,000만 원은 본 사업부지내 지하상가의 분양권으로 지급하는데 일반 분양가액 기준(부가세는 포함)으로 한다(단, 분양시 원고에게 지하상가 위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준다).
 3. 위 제2항의 분양권 및 분양시 위치 선택권은 원고가 선택하는 것으로 약정한다(본 사업부지 지하상가의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분양권은 V이 법인인감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약정한다).
 4. 만약 2022. 6. 31.까지 지하상가 분양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Y이 원고에게 분양권의 가액인 현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아. 법무법인(유한) W은 2020. 11. 20. 법무법인 감동으로부터 원고의 관련 민사사건 소취하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소취하 동의서를 첨부한 원고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원고의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자.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은 2020. 11. 20. 법무법인(유한) W의 계좌로 이 사건 제1합의약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약정금 501,600,000원6) 을 송금하였다.
- 차. 법무법인(유한) W과 법무법인 감동으로는 2020. 11. 24.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 관련 가처분사건, X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추후 관련 민사사건 및 위 각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합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카. 피고들은 2020. 11. 27. V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X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 X과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0형제14745호), 2020. 12. 21.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0형제1685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 32, 33, 36, 37호증, 을 제1, 2, 4,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9. 7. 31. U와 사이에, U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 매수대금 330,000,000원을 차용하여 U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사유지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U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명의를 피고들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U으로부터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명의신탁 약정을 '이 사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임의로 제3자인 V에게 매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매매대금 차액인 19억 2,000만 원(= V에 대한 매도대금 22억 5,000만 원 - U으로부터의 매수대금 3억 3,000만 원) 중 피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9억 2,000만 원(엄밀히는 그중 각 피고별로 각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2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 6. 26.자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예비적 청구).

나아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20. 11. 13.자 이 사건 제1합의약정 및 2020. 11. 24.자 이 사건 제2합의약정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 관련 가처분사건, X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여 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2예비적 청구).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V에 매도한 대금인 22억 5,000만 원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되돌려 주었다면 원고가 Y 또는 주식회사 A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Y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약정금 19억 5,000만 원(= 2019. 11. 15.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 11억 원 + 2020. 3. 18.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 4억 원 + 이 사건 제1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 10억 원 중 미지급받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중 일부인 19억 2,000만 원(엄밀히는 그중 각 피고별로 각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관련 민사사건, 관련 가처분사건, X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더 이상 관련 민사사건 및 위 각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법무법인(유한) W와 법무법인 감동으로는 2020. 11. 24.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 관련 가처분사건, X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추후 관련 민사사건 및 위 각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합의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향후 '관련 민사사건 및 위 각 형사고소사건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법무법인(유한) W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무법인(유한) W은 2020. 1.경부터 관련 민사사건,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왔고, 원고와 Y 사이의 2020. 11. 13.자 이 사건 제1합의약정에서도 그 약정금 501,600,000원을 법무법인(유한) W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대리관계를 이어 왔으므로, 법무법인(유한) W은 2020년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민·형사상 제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대리권의 범위에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화해'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되는 점, ② 관련 민사사건, 관련 가처분사건은 2020. 11. 20. 소취하 및 신청취하로 종료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은 2020. 12. 21.에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바, 관련 민사사건 종료 이후에도 법무법인(유한) W의 원고에 대한 대리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관련 민사사건이 2020. 11. 20.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에도 2020. 11. 24.자 이 사건 제2합의약정은 이미 종료된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취하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합의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위 2020. 11. 20.자 소취하 이전이나 그 무렵 이미 쌍방 대리인 사이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2020. 11. 13.자 이 사건 제1합의약정은 원고와 Y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에 이미 제2조 제2항에서 X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취하 및 이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민형사상 소(고소) 제기 금지를 정하고 있는 점, ⑤ 이 법원의 법무법인(유한) W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법무법인(유한) W의 변호사 AC은 '피고들 측 소송대리인과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0. 11. 20.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위 소취하 합의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제2합의약정시인 2020. 11. 24. 당시 법무법인(유한) W이 원고에 대하여 위 부제소합의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원고의 위 소취하시인 2020. 11. 20. 당시에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쌍방 대리인 사이에서 위 부제소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W에 의하여 유효하게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인 V에 매도·처분하였음을 이유로 그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관련 민사사건(원고가 주장하는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그 3자간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업약정 제6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되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취지로 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B이 지정한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최초에 원고와 U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U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하였으나,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U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12호증의 2) 등기권리증 또한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2호증의 3 등기권리증,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통상적인 3자간 명의신탁관계에 비추어 이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3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더라도 위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은, 2019. 6. 26.자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X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및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토지임에도 X과 피고 B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이거나 원고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사건이었다(갑 제10호증의 2 참조).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서 ‘위 각 형사고소사건과 관련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약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 이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약정은 피고 B 1인과 체결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피고들 전체의 위 명의 이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라.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2020. 11. 13.자 이 사건 제1합의약정 및 2020. 11. 24.자 이 사건 제2합의약정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 관련 가처분사건, X 등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여 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약정은 2020. 11. 24.자 제2합의약정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자체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인바, 그 부제소합의에 수반된 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부제소합의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합의약정 및 이 사건 제2합의약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제1, 2합의약정을 통하여 관련 민사사건 소를 취하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합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합의약정 제3조에 따른 1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중 V로부터 5억 5,000만 원(제세금 제외 5억 16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합의약정을 통하여 관련 민사사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까지 원상회복하여 준다는 것은 수궁하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제1합의약정 제3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Y이 지정한 V의 명의로 경료될 것’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 ⑤ 한편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B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약정하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2020. 11. 13. 원고와 이 사건 제1합의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갑 제13, 14호증), 그 이후인 2021. 12. 1.에는 ‘당시 피고 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여(을 제6호증), Y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 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준영, 판사 고준홍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예비적 청구원인(2019. 6. 26.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원인(2020. 11.경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을

추가하였다.

2) 피고 B의 지분은 1000분의 100, 피고 C의 지분은 1000분의 100, 피고 D의 지분은 1000분의 200, 피고 E의 지분은 1000분의 600이다.

3) 피고 F, G의 지분은 각 1000분의 153, 피고 J의 지분은 1000분의 306, 피고 H의 지분은 1000분의 169, 피고 I의 지분은 1000분의 219이다.

4) 위 가처분 결정은 주문에 오기가 있어 2020. 2. 10.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갑 제11호증 참조).

5) 이 사건 제1합의약정서(갑 제32호증) 제3조에는 “여수시 Z, AA”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여수시 R, S”의 오기로 보인다(원고의 2023. 4. 14.자 준비서면 2쪽 참조).

6) 위 501,600,000원은 이 사건 제1합의약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약정금 5억 5,000만 원에서 같은 조항이 정한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23. 4. 14.자 준비서면 1쪽 참조).